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호에 행정시의 시장이 포함됨에 따라 행정시의 점검결과 통보시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토록 관련 시행령(제3조)을 개정하고,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제15조)으로 신설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시가 포함되어 점검결과 통보시 특별자치도 포함(안 제3조 개정)

- 관리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만 통보하였던 것을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토록 개정

나.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규정 (안 제15조 신설)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 시 필요한 대행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2. 18. ~ 3. 31.)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완료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신설한다.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① 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2. 소규모 공공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변 장애물 현황
3.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안내표지판 및 시설의 관리 상태(안내표지판 또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해당 시설의 재해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및 그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대행자의 선정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재관리 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행하려는 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① <생략> ② <생략> ③ 관리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할 때에 <u>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u>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① <생략> ② <생략> ③ ----- ----- ----- <u>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 -. ④ <생략>
<u><신 설></u>	<u>제15조(대행자의 선정 등) ① 법</u> <u>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행하려는 자의 능력, 사업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연 락 처	(044) 205 - 5149